



재해 개요

- 2023. 5. 22.(월) 10:50경, 세종특별자치시 □□면 소재 「○○○○」 공사 현장에서, ○○ 소속 재해자가 △△부근 언덕 위에서 소나무 벌목작업 중 벌목된 소나무가 튕겨 올랐다 떨어지면서 재해자의 두부를 협착하여 사망한 재해임



재해 발생 원인

- 벌목 작업방법 미 준수 및 관리 미흡
 - 수구*각이 작은 상태에서 추구**를 수구보다 아래에 실시하였고 경첩이 불균일하고 약하여 조기 파괴됨에 따라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쓰러지는 과정에서 능선에 의해 벌도목 말구가 솟아오르는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여 대응하지 못함
 - * 수구 : 벌목할 때, 서 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는 쪽에 켜기형상으로 잘라낸 부분(나무가 쓰러지는 방향)
 - ** 추구 : 수구를 자른 뒤 그 반대쪽을 나무의 직각으로 톱질해서 자르는 마무리 절단부분
- 벌목작업 시 대피로 및 대피장소 지정 및 확보 미흡
 - 벌목작업 전 벌도방향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미리 확인하여 안전한 대피장소를 정하여야 하나, 벌도 대피장소를 지정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였으며, 주변의 수풀, 뿌리, 잡목 및 가지 등 방해물을 사전에 제거하지 않아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함



재해 예방 대책

- 벌목 작업방법 준수 및 관리 철저
 - 작업 전 수형, 지형 등 벌도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적절한 벌목방법을 결정하고, 안전작업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, 관련 경험이 많은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근로자가 올바른 작업방법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고, 작업구간의 벌목대상의 수형과 지형 등 특이사항에 대해 미리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함
- 벌목작업 시 안전한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보
 - 경사, 수형, 인접목, 풍향 등을 고려하여 미리 적정 대피장소를 지정하고, 벌목작업 시 잡목, 가지, 뿌리 등의 방해물을 사전에 제거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

※ 본 사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·직영·도급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